

4. 언론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신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자격을 강화했다. 이 역시 위반했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구 개선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숫자를 종전 40인 이상 80인 이내였던 것을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늘렸으며, 위원의 추천자격도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재위원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중재부에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을 두되, 지금까지 법관만이 중재부의 장을 맡도록 했던 것을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의 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도 중재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자,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공무원 가운데서 위촉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이 관련된 중재사건이 있을 경우 제척사례를 명시하고 중재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만들었다.

위원회의 활동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IV.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언

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라고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를 말한다.(제2조10항)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는 크게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로 나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까지 의미가 불명확했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림으로써 신청과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의 혼동을 줄였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정정보도’라고 함은 방송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정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을 구하는 이유 및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한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언론사의 대표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게재해야 한다.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보도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언론사의 정정보도는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 청구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